

[의결권 행사정책]

당사는 '의결권행사 지침' 아래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의 의결권 정책이 담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A. 지배구조

주주총회의안	찬성	반대	사안별 검토	필수검토사항	
				찬성요소	반대요소
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1.1 소수주주권 보호	○			주식보유기간이나 비율을 완화하는 경우	
1.2 주주총회					
1)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증가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주주의 직접 참석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되는 주주총회 개최제한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3)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권한 제한		○			
4) 주주의 서면투표 실시 허용 제안	○				
5) 주주의 전자투표 실시 허용 제안	○				
1.3 주주제안			○	동종업계 상장사와 재무구조 및 주주정책을 정량 비교할 때 주주이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	주주 다수가 승인한 주주의 제안을 시행하지 않는 이사의 연임
1.4 안건의 공개					
1)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총회상정		○			
2)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처리 허가를 구하는 제안		○			
1.5 안건의 상정					
1) 일괄상정을 금지하는 안	○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을

					주주들에게 인기 있는 안건과 묶어 통과시키려는 하는 경우
2) 일괄 상정한 안			○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	
1.6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1)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제한			○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2)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제안		○			
1.7 의결주체의 변경					
			○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는 안
1.8 비밀투표					
	○			위임투표의 전 과정이 비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안	
1.9 회사명칭의 변경					
			○		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10 회계연도 변경					
			○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①잡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 ②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
1.11 의사정족수 변경					
			○		의사정족수나 의결권수를 변경하는 제안
1.12 의결권 대리행사					
1) 의결권 대리행사 자격			○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
2) 과도한 대리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참석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
1.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					
			○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폐쇄기간을 연장하

경				경우	는 경우
2. 이사회					
2.1 이사회추천위원회					
1)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	○				
2)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	○				
2.2 대표이사					
1) 대표이사의 선임			○	전문성, 경험과 평판, 윤리성, 겸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표이사 3기 이상 연임 시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	○				
3)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	○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 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운영.권한. 책임.조직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고위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경우
2.3 집행임원					
1) 집행임원제도 도입안	○				
2)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	○				
2.4 이사의 선임					
1) 독립적인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의 선임	○				①본 가이드라인에 위배 ②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 불만족

<p>2) 이사의 선임</p>		<p>○</p>		<p>*일반적으로 반대투표하는 경우 ①법규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이사가 전년도 주주 다수에 의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③이사회나 이사회회의의 주요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④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⑤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거나 감춘 증거가 있는 경우 ⑥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⑦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p>
<p>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p>		<p>○</p>		<p>*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투표 가능 ①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책임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p>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 2항 단서규정을 최 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 우를 명확히 할 제 시할 것
4)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				
5) 경영자와 반대하는 측간 의 경쟁이 있는 경우			○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 성	
6)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 예정 이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받 은 후보 중 최다 득표한 후보 순으로 이사를 선임 하도록 하는 안	○				
7) 이사선임시 투표방법			○	이사후보 각자에 개 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	이사후보를 묶어 일 괄 투표하는 방식
8) 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 경하는 안			○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 책임을 저 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 하려는 경우
9)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및 주요 공시대상 안 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 시하도록 하는 안	○				
2.5 이사회 규모			○		①이사회 내 위원회 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제안 ②개별 이사의 영향 력을 무력화할 정도 의 많은 이사를 두 려는 제안
2.6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	○			이사회 운영의 효율	합리적이고 정당한

치하는 안				성·독립성을 저해하는 특별한 우려가 없는 경우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2)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	○			*상세한 위원회 규정 :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평가 및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우	
3)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				
4)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2.7. 내부거래위원회					
1) 명칭을 불문하고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				
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				
3)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	○				
2.8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1)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				
2)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				
2.9 사외이사					
1) 이사회에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중을 낮추는 경우도 포함	
2) 사외이사 선임			○	* 다음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투표 ①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p>②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p> <p>③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회사,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p> <p>④최근 3년 이내에 회사(최대주주, 계열회사 포함)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법률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p> <p>⑤신규임기를 포함하여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7년(금융회사는 5년)을 초과하는 자(단, 재임연수에는 계열회사 재임기간을 합산하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p> <p>⑥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p> <p>⑦그 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p>
3)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건	○			
4)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5)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		<p>*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투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책임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규정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2.10 임기 중 해임안		○		이사의 임기 중 이사에게 불법행위, 법령

				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있는 경우	
2.11 이사의 집중투표제	○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건	
2.12 시차 임기제의 도입	○				
2.13 이사의 활동공개					
-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실적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	○				
2.14 이사회 평가					
-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 및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	○				
2.15. 이사 책임보험					
-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제안	○				
2.16.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분리	○				
1) 고위 경영자(CEO,CFO)등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안	○				
2)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직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제도를 도입하	○				

는 제안					
3. 감사 및 감사위원회					
3.1.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				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
2)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1) 직무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후보		○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		○			* 결격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 ①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 공개, 도산, 구조조정,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보수를 넘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	○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	○				

5) 이사선임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 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 출하도록 하는 안	○				
3.3.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이 "적정"이 아닌 경우		○			
3.4. 외부감사비용의 공개	○				
3.5. 외부감사인의 감사					
-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 인으로부터 감사이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	○				
4. 임직원의 보상					
4.1. 임원보수					
1)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 회의 규모, 경영성과 등 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보수한도 안	○				
2) 보수가 5억 미만이더라 도 보수 수준이 가장 높 은 일정 수 이상의 이사 보수를 공개하거나, 보 수 공시기준을 5억원 미 만으로 낮추는 안	○				
3) 개별 임원보수 공시를 미등기 임원(최고재무임 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 계인 등)에게 확대하는 안	○				
4.2. 보상위원회의 구성					
1)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	○				
2)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제안	○				
3)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상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	○				
4)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	○			* 구체적인 내용 ①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 상액의 구분) ②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주식,주식연 계상품,기타 등)	

				③현금 및 주식보상의 배분기준 ④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⑤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기준 ⑥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⑦이연보상액(당해 회계연도 지급액) ⑧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 정 보상에 관한 정보	
4.3. 사외이사의 보상					
- 사외이사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 되, 퇴직 시까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	○				
4.4.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	경영자의 업적과 보 수를 연계시키는 제 안	성과에 연계되지 않 는 경영진 보상체계
4.5. 주식보상제도	○				
4.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1) 임직원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스톡옵션을 부여 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 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 안	○				
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 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제안	○				
3) 주주가치 희석의 정도가 10% 이상이거나 스톡옵 션의 규모가 총 발생주 식의 2%를 초과			○		
4) 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 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 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 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제안			○	증자 및 소각 등 주 식가치의 변동 시 기 존 스톡옵션의 실질 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 우	미래 시점에 재조 정, 재발행 가능성 을 소지한 스톡옵션 플랜
5) 스톡옵션의 행사유보기 간을 단축하는 제안			○		
6) 특정한 성과목표 달성 조건으로 권리행사가 가 능한 스톡옵션플랜	○				

4.7. 자사주 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부		○			
4.8. 보상제도					
1) 급여체계에 성과목표를 추가하는 제안	○				
2) 동종업계 성과, 시장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성과연동형 보상	○				
3) 장기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	○				* 다음의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 ①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목표의 제시 ② 매도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③ 합리적인 부여방법 및 지급기준의 제시 ④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보상규모의 적절한 설정
4)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	○				
5) 성과연동보상 중 6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	○				
6)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	○				
7) 사외이사에게 성과급,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안		○			
4.9. 우리사주제도	○				
4.10.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찬성 ① 매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의 최소 85%

				이상 ②제공기간이 24개월 미만 ③동 제도로 인한 의결권 희석이 10% 미만
4.11. 퇴직보상				
1) 과도한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급 지급 안		○		* 과도한지 여부 :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
2) 최고경영자 혹은 사내이사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제안		○		
4.12.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제안				
1) 임직원 보수와 기업구조조정간의 관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주주의 제안			○	
2) 임직원의 보수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제안		○		
5. 기업구조조정				
5.1.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향상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제안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 구조조정제안
5.2. 자산의 매수 및 매각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자산매수 제안 : 매수가격, 공정성,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사업상 시너지, 이해상충 등을 고려 - 자산매각 제안 : 대차대조표에 대한 영향, 재무 및 영업상의 기대효과, 자금의 예상 사용처, 거래의 공정성, 이해상충 등을 고려
5.3. 증권의 전환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화, 전환가격, 재무적 이슈, 경영권 이슈, 이해상충 등을 고려
5.4. 채무재조정 - 채무재조정안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증가시키거나 발행하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제안의 조건, 재무상황, 경영권상의 고려사항, 이해상충

는 제안				문제 등을 고려
5.5.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안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설립목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5.6. 조인트 벤처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 소유지분의 비중,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이해상충 등을 고려
5.7. 청산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
5.8. 회사분할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분할방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경영자의 인센티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
5.9.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			○	* 재무상황, 세금 및 규제상의 혜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대안 등을 고려
6. 기업인수, 위임장 대결, 인수 방어				
6.1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1) 인수합병 자체 혹은 이를 위한 법정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			○	*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 결합된 회사의 전망,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 합병대금의 적정성 - 시장반응 - 협상절차의 적정성 -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 자본구조의 변화 - 이해상충
2) 다른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자들의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제안	○			
6.2. 위임장 대결				

<p>1) 위임장 대결 시 현직 경영자 또는 그에 대한 도전자를 지지할지에 관한 판단</p>			<p>○</p>	<p>* 다음의 사항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한 조치 - 주주제안에 대한 기업의 반응 - 현 경영자와 도전자간의 기업개선이나 기업지배 전략상의 차이 - 도전자에 대한 찬성투표가 이사회 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 - 이사 후보의 경험과 능력 - 현 경영자의 경영고착화(entrenchment) 정도 - 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 	
<p>2) 위임장 대결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안</p>			<p>○</p>		
<p>6.3.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 (Going Private Transactions)을 위한 거래</p>			<p>○</p>	<p>주주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p>	<p>거래가 다수의 인수자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들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p>
<p>6.4. 왕관보석 방어전략 (Crown Jewel Defen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전략 		<p>○</p>		<p>주주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p>	
<p>6.5. 그린메일(Greenmai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대상기업이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로부터 그 주주가 이미 인수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의미 		<p>○</p>			
<p>6.6.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p>		<p>○</p>		<p>* 예외적인 찬성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 ii)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 iii)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종사원들 	

				과 비교해 적정한 경우	
6.7. 초다수의결(Super-Majority Vote)		○			
6.8. 본사이전			○	주주들에게 이로운 경우	기업인수 제안을 봉쇄하려는 경우
B. 자본구조					
주주총회의안	찬성	반대	사안별 검토	필수 검토사항	
				찬성요소	반대요소
자본구조					
1. 보통주의 액면가 조정					
- 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경영자의 제안	○				
2. 법정자본금의 증가			○	-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직원의 주식인수권의 행사에 대비한 목적인 경우	외부의 기업인수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
1)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		○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	
2) 법정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안			○	주식분할이 목적인 경우	이미 많은 법정발행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나 발행하지 않았거나, 현재의 법정발행주식수보다 100% 이상 많게 법정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3. 자본금 감소		○		*예외적인 찬성 사유 - 기업의 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의 경우	
4.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					
1)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의	○				

매각은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					
2)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인 경우		○			
5.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안			○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2)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제안	○				
3) 자기주식 매입제안			○		i)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거나 ii)차별적 자기주식 매입을 방지할 대책이 없는 경우 iii)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해서 실행하는 경우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	○				
5)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			○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를 없앨 목적인 경우	
6)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	○				
7)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		○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6. 신주인수권					
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		○		그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	

				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2)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		○		발행목적, 발행규모 및 가격, 발행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7. 종류주식			○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8. 실권주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 사외이사 등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	○				
9. 우선주의 발행			○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주식의 다른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며, 그것이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10. 사모, 워런트, 전환무보증채권의 발행			○	목적이 합리적이고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우	기업인수의 방어목적
11. 자본구조의 개편			○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자본구조의 단순화 여부 - 유동성의 증가여부 - 전환조건의 공정성 여부 -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 - 자본구조개편의 사유 - 이해상충 여부 -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	
12. 주식병합			○	-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인 경우	
13.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	○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

14. 배당정책				-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 - 중간,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	-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1)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	○				
2)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	○				
3)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			○	주주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	
15. 사채					
1)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2) 특정주주 및 제3자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			○	발행목적, 발행규모 등이 적정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시장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	○				
4)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자 하는 제안	○				
5)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경우		○			
6)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20%이상 증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대한 안		○			
7)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	○				
8) 담보의 제공			○		
9) 차입한도의 확대			○		